



유전자 검사 상용화와 생명보험산업의 영향

김미화 연구원

유전자 정보 분석 기술의 발달에 따른 유전자 검사 비용 하락으로 유전자 검사가 상용화되고 있음. 유전자 검사가 상용화될수록 생명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유전자 정보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하지만, 현재의 유전자 검사 관련 규제는 유전자 정보에 근거한 차별 금지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음. 유전자 검사 상용화에 따른 역선택 및 해지율의 증가 문제는 향후 생명보험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생명보험에 있어 유전자 정보 관련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유전자 정보 분석 기술의 발달에 따른 검사 비용 하락으로 유전자 검사가 상용화되고 있으며 이는 생명보험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보험청약자의 유전자 검사로 인해 청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발생하는 정보의 불균형은 역선택과 해지율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
 -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개인일수록 보험을 더 많이 가입하고 심장 질환이나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적은 개인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해지할 수 있음
 - IAA 보고서¹⁾에 따르면 현재 인구의 약 0.5%가 유전자 검사를 받고 있으나, 앞으로 인구의 2~5%가 유전자 검사를 받을 경우 역선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건 수는 7~1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가 개인의 유전자 검사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개인은 보험가입 거절을 우려하여 건강에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어 개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편,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유전자 검사 규제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유전자 검사 결과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등 빠르게 발달하는 유전자 검

1) Institute of Actuaries of Australia(2017, 5), Thinking about life insurance through a genetic lens

사 기술의 속도를 반영하지 못함(표 1) 참조)

- 상당수 국가에서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유전자 검사 결과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유전자 정보 이용 금지법을 제정하고 있으나, 보험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함
- 호주는 보험회사가 청약자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청약자가 유전자 검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 그리스와 일본의 경우 관련 입법 규정은 없지만 보험업계가 자발적으로 행위규범 등을 마련하여 보험계약에 있어 유전자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표 1〉 국가별 생명보험산업 관련 유전자 검사 규제 현황

구분	국가(관련 법규 시행연도)
유전자 검사 결과 사용 전면 금지	오스트리아(2005), 벨기에(1992), 캐나다(2017), ¹⁾ 덴마크(1997), 프랑스(2004, 2011), 아일랜드(2005), 폴란드(2015), 포르투갈(2005), 싱가포르(2007)
유전자 검사 결과 사용 제한적 금지	독일(2010), 네덜란드(1998), 스위스(2004), 영국(2014)
보험회사의 유전자 검사 요구 금지 청약자의 유전자 검사 거부 시 차별 금지	호주(2016)
보험업계의 자발적 행위규범	그리스, 일본
규제 체계 없음	중국, 핀란드, 인도, 스페인, 미국 ²⁾

주: 1) 2017년 3월 9일 유전적 차별 금지법(Bill S-201)이 캐나다 연방 하원 통과

2) 미국의 유전정보 차별 금지법(GINA)은 건강보험 및 고용 분야에 국한됨

자료: Geneva Association(2017), Genetic and Life Insurance – A view into the microscope of regulation 에 기초하여 작성

■ 유전자 검사 상용화에 따른 역선택 및 해지율의 증가 문제는 향후 생명보험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생명보험에 있어 유전자 정보 관련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유전자 검사 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생명보험에서의 유전자 정보사용에 대한 규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²⁾
 - 2016년 6월 정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병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는 개인의뢰(DTC)³⁾ 유전자 검사를 허용하였으며, 2017년 3월부터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⁴⁾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함 **kiqi**

2) 우리나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유전자에 기초한 차별 금지 및 보험계약상 유전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음

3) Direct To Consumer

4) Next-Generation Sequencing